

《至正條格》鹽法 연구*

김준현**

목 차

- I. 머리말
- II. 元代 소금 專賣 제도 개관
 - 1. 元代의 통치 제도
 - 2. 元代의 소금 專賣制
- III.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
 - 1. 판매자 및 운송자 대상 조항
 - 2. 관리자 대상 조항
 - 3. 생산자 대상 조항
- IV. 맺음말

[국문 요약]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元代는 소금 전매를 통해 얻는 국가 재정의 수입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소금 전매 제도의 운영과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鹽法이라고 하는 소금 전매와 관련된 각종 행정 규범 및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이 등장하였고 또한 그것이 체계화된 시기였다.

元代의 법전은 현존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2003년 국내에서 《至正條格》의 잔본이 발견되면서 원대 법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至正條格》에 드러난 元代 鹽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元典章》과 비교해 보면 규정이 보다 정리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원대에는 전매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많은 관리들을 활용하였고 따라서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셋째, 《至正條格》의 엄법에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하여

* 이 글은 줄고, 「《至正條格》鹽法 연구 : 《大明律》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생산하는 부산물 등에 관한 지엽적인 규정까지 사례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至正條格, 鹽法, 元典章, 私鹽

I. 머리말

元代에는 소금 전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국가 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¹⁾ 따라서 국가는 소금 전매 제도를 엄밀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처벌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생겨난 법이 ‘鹽法’이라고 통칭되는 규정들이다. ‘鹽法’은 넓은 의미로는 소금 전매와 관련된 각종 행정 규범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 처벌 규정만을 지칭한다. 그런데 元나라 이전에 唐나라의 《唐律疏議》나 宋나라의 《宋刑統》에는 ‘鹽法’이라고 이름 붙여진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²⁾ 하지만 明나라에 들어서면 《大明律》에 ‘鹽法’이라는 표제 아래 12개의 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元나라에서 시행된 소금 전매 제도 및 처벌 규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元나라의 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사료는 당시의 법전이지만 온전히 전해지는 元대의 법전은 없다.³⁾ 그런데 2002년에 국내에서 《至正條格》의 잔본이 발견되었고,⁴⁾ 元代 法制 분야의 연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 보면 우선 발견 직후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와 함께 《至正條格》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1) 《元史》〈卷94 食貨2〉[鹽法] 國之所資, 其利最廣者莫如鹽.

2) 《宋會要》 등의 몇몇 사료에서 염법 관련 조항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반포한 법전이 아니며, 金나라의 《泰和律》은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염법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반포한 법전 가운데 현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였다.

3) 《大元通制》는 완본이 아니며 남아 있는 부분에는 염법 관련 조항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大元聖政國朝典章》은 방대한 사료로서 염법에 관하여 참고할 부분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국가가 편찬한 공식 법전은 아니었다. 이하 제2장 제2절 元대의 法令 참고.

4) 《至正條格》의 전래 및 서지학적 정보는 김문경, 「元刊本《至正條格》에 대한 기초적 고찰」, 『至正條格-校註篇』(휴머니스트, 2007); 안승준, 「《至正條格》의 소장 및 보존 경위에 대한 고찰」, 『至正條格-校註篇』(휴머니스트, 2007) 참조.

가 있었다.⁵⁾ 그리고 元代 한문의 특징인 몽골어한역체의 문법에 주목한 언어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⁶⁾ 법학계에서는 《至正條格》의 발견 이전과 이후에 한국법제사 분야에서 《至正條格》이 갖는 의의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⁷⁾ 하지만 《至正條格》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至正條格》은 비록 완본 형태는 아니었지만, 잔본에 수록된 斷例 廢庫편에는 염법 조항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至正條格》에 수록된 염법 조항을 《大元聖政國朝典章》(이하 《元典章》으로 약칭) 및 《元史》 등의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元代 염법의 모습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선 元代에 행해진 소금 전매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Ⅲ). 여기에서 원대의 통치 제도는 鹽法과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언급하겠다. 그리고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至正條格》의 염법 조항을 기술할 것이다(Ⅳ). 각각 판매자 및 운송자, 관리자, 생산자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원대 염법의 특징을 구분하여 고찰하기 위함이다.

Ⅱ. 元代 소금 專賣 제도 개관

1. 元代의 통치 제도

1) 통치 기구

元나라의 중앙 기구는 황제 아래에 太師·太傅·太保로 구성된 三師府가

5) 김호동, 「《至正條格》의 편찬과 원말의 정치」, 『至正條格-校註篇』(휴머니스트, 2007); 이개석, 「《至正條格》의 편찬과 法制史上的 의의」, 『至正條格-校註篇』(휴머니스트, 2007).

6) 양오진, 「이문(吏文)과 『지정조격(至正條格)』의 언어」, 『중국언어연구』 27(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7) 박병호, 「朝鮮初期 法制定과 社會相: 大明律의 實用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0(국사편찬위원회, 1998); 정공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50-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여러 관직을 통할하는 구조이다. 唐나라 때부터 시행된 3省 6府제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尙書省과 門下省은 中書省에 병합되어 중서성과 여기에 소속된 6部를 중심으로 국가의 정사가 운영되었다. 吏戶禮兵刑工의 6부 가운데에서 戶部는 소금 판매 허가장인 鹽引의 발행을 담당하였고 소금 전매와 관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거나 건의하는 기구였으며, 형사 처벌과 연관된 사안에 있어서는 刑部와 함께 의견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염법과 관련한 여러 규정은 皇帝의 聖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어떤 사안에 대해 戶部에서 의논하거나 또는 戶部와 刑部가 함께 의논하여 나온 결론을 중서성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에는 行省이라고도 부르는 行中書省을 두었는데, 행성은 지방의 행정과 사법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기구였다. 또한 별도의 감찰기구로서 御史臺를 두었는데 중앙에는 御史大夫가 있었고, 지방에는 肅政廉訪使司와 行御史臺를 설치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행정 구역

元나라의 수도인 大都 주변은 중앙의 통치 기구인 中書省이 직접 관할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모두 11개의 행성이 있었다. 河南·陝西·遼陽·四川·甘肅·雲南·嶺北·征東·江浙·江西·湖廣의 행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행성의 아래에는 路·府·州·縣이라는 각급의 행정기구가 있었다. 소금 전매 업무를 담당하는 관사는 소금 생산지에 따라 위의 지방 행정 구역상의 行省 및 路급에 설치하였다. 시기별로 변동은 있지만 大都·河間·山東·河東·兩淮·兩浙·福建·遼陽·四川·廣東·廣海·陝西에 세웠는데, 대체로 생산량이 적은 곳은 묶어서 行省급으로 설치하고, 생산량이 많은 곳은 路급으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종 설비를 갖추고 소금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은 鹽場이다. 운사에 소속된 염장의 수도 적게는 陝西의 1개소부터 많게는 兩淮의 31개소까지 다양하였으며,⁸⁾ 특히 바다와 가까운 兩淮·兩浙·河間·山東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 소금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大都·河間·山東·河東은 수도와

가까웠기 때문에 중앙의 中書省 戶部에 직접 예속되었고, 나머지 관사는 지방의 行省에 예속되었다. 행정의 감찰은 지방의 行御史臺에서 중앙의 御史臺로 보고하면 어사대로부터 다시 중서성의 호부에 보고되어 의논되기 때문에 결국 소금 전매와 관련된 최종 관할은 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⁹⁾

3) 鹽法 관련 관리

元나라 초기에는 河間과 山東 등에 課稅所를 설치하여 소금과 술 등 6가지 품목에 대한 전매 수익을 징수하였다. 이때에는 소금을 일반적인 세금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 전문적인 鹽官을 두지 않았다. 太宗 2년(1230)에 金나라의 제도를 따라 염법을 세우고 비로소 염관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과세소는 中統(1260~1264)·至元(1264~1294) 연간에 轉運司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금 전매 업무를 전담하였다. 至元 16년(1279) 宋나라를 멸망시킨 뒤에는 송나라의 제도를 채용하여 鹽引法을 사용하였다. 戶部에 印造茶鹽引局을 설치하고 大使와 副使를 각각 1명씩 두어서 茶引·鹽引 등 국가 전매 품목류의 판매 허가증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中書省 戶部를 중심으로 소금 전매 업무를 담당하는 運司, 지방의 행정 및 방비를 담당하는 民官·軍官, 이들 여러 관리들을 감찰하는 御史臺·肅政廉訪司가 모두 염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었다.

(1) 運司

大都¹⁰⁾·河間·山東·兩淮·兩浙·陝西·遼陽·福建의 8 지역에는 都轉運鹽使司를 설치하고, 四川에는 茶鹽轉運司를 설치했으며, 廣東·廣海 2 지역에는 鹽課提舉司를 설치했다. 중요 생산지에는 도전운염사사를 설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생산지에는 다염전운사나 염과제거사를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¹¹⁾ 이들 관사의 호칭은 격이 낮은 提舉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運司, 鹽

8) 《元典章》〈吏部3 官制3〉[鹽場窠闕處所]의 자료를 참조.

9) 曾仰豐, 『中國鹽政史』(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7), 105면 참조.

10) 大都 運司는 大德 원년(1297)에 河間 運司로 병합된다.(《元史》〈卷94 食貨志2〉[歲課] 大都之鹽……大德元年, 遂罷大都鹽運司, 並入河間.)

運司 등의 약칭으로 일컬어졌다.

元나라의 제도에서 운사의 아래에는 同知·副使·運判·經歷·照磨 등의 관원이 있었으며,¹²⁾ 또한 大德 4년(1300)에 真州·采石에 批驗所를 설치하고 매 소마다 提領 1명, 大使 1명, 副使 1명을 두어 염인과 소금의 무게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하였다.¹³⁾

(2) 民官과 軍官

또한 소금의 생산 및 전매를 전담하는 鹽運司 이외에도 각처의 지방 행정 조직과 군대 조직도 鹽法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路·府·州·縣과 같은 지방 관서는 民戶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管民官이라고 불렸으며, 私鹽을 감찰하고 반납한 退引의 처리 및 運司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¹⁴⁾ 그 밖에 私鹽이나 犯界鹽貨와 같은 소금 관련 범죄가 발생하거나 5일의 기한을 어기고 鹽引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사건의 처리는 해당 路와 府의 담당 관리가 맡도록 하였다.¹⁵⁾

또한 각 급의 군대에는 百戶·千戶·萬戶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들은 군인을 통솔했기 때문에 管軍官이라고 칭했다. 군인들은 각지의 방비를 담당 하면서 私鹽과 犯界鹽貨 등의 소금 관련 범인을 잡아내는 업무도 담당하였

11) 이러한 명칭은 宋나라의 제도인 도전운사·전운사·다염제거사를 따른 것이다. 송나라 초기에는 소금을 관에서 운반하고 관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관의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염관은 소금 관리와 그것의 운반 업무도 겸했다. 그런데 원나라의 소금 전매제는 관에서 소금을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관의 명칭에 운반과 관련된 ‘運’이 들어간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曾仰豐, 앞의 책, 104면 이하 참조). 하지만 판매를 위한 운반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재료의 운송 및 창고로의 수송 등에 운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을 그대로 습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12) 《元史》〈卷85 百官志1〉大都河間等路都轉運鹽使司, 秩正三品, 掌場竈權辦鹽貨, 以資國用. 使二員, 正三品; 同知一員, 正四品; 副使一員, 正五品; 運判二員, 正六品. 首領官: 經歷一員, 從七品; 知事一員, 從八品; 照磨一員, 從九品. ……山東東路轉運鹽使司, 品秩·職掌同上, 運判止一員. ……河東陝西等處轉運鹽使司, 品秩·職掌同前, 運判增一員.

13) 《元史》〈卷91 百官志7〉大德四年, 復置批驗所於真州·采石等處. ……批驗所, 每所提領一員, 正七品; 大使一員, 正八品; 副使一員, 正九品. 掌批驗鹽引.

14)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④ 仍委提點官置簿關防, 毋致停藏臥引, 影射私鹽. 拘到退引, 當官隨即毀抹, 每季申解運司收管.

15) 《至正條格》〈斷例 廩庫〉§ 363 [鹽課] ③ 私鹽生發并犯界鹽貨, 或違限不繳引者, 即將本路府當該官吏勾斷.

다. 특히 군사적 요충지이자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인 隘口를 지키는 把隘軍人이나 나루터·항구 등에서 과수를 서는 군인은 지리상의 이유로 사염을 적발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였다.¹⁶⁾

이들 민관과 군관의 여러 관사에서 私鹽犯을 붙잡으면 간략히 문초한 뒤 범인과 사염 물자를 바로 運司로 압송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¹⁷⁾ 이것은 체포를 담당한 관리들이 포상을 많이 받기 위해 수사 범위를 계속 넓혀 무고한 사람들까지 연좌되는 것을 막고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廉訪司

肅政廉訪使司는 보통 廉訪司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지방 관리들을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금의 전매는 막대한 이익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들의 부정이 발생하기 쉬웠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찰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었다. 일반적인 관리 감찰 업무는 御史臺의 정7품직인 監察御史도 수행하였으나, 이는 외직인 廉訪司의 관원과 달리 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법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廉訪司보다 활동이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엄장에서 생산자인 竈戶에게 인건비 등 비용인 工本을 나누어 줄 때 심사하는 등의 업무는 廉訪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다.¹⁸⁾ 延祐 6년(1319)에는 관리들이 뇌물을 수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運司에서는 이전처럼 함부로 단죄할 수 없고, 지방의 감찰을 담당하던 廉訪司에게 보내어 단죄하도록 하였다.¹⁹⁾

16)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5 [私鹽罪賞] ⑨ 龍鎮衛官并本管守把隘口軍官·軍人, 捉獲私鹽·犯界鹽貨.; 《至正條格》〈斷例 廢庫〉 § 373 [軍民官縱放私鹽] 管民提點鹽法正官·關津渡口守把軍官·軍人·巡尉·弓手人等, 通同縱放私鹽者, 例與犯人同科.

17)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5 [私鹽罪賞] ⑦ 諸人告捕獲私鹽, 所捕官司略問招詞, 將犯人、榷貨隨即解送運司理斷, 不得停留.

18)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6 [私鹽罪賞] ② 運司竈戶工本, 從行省選委有司廉幹官員, 親詣各場, 從實唱名, 給散割付. 運司官隨即體覆, 行移廉訪司, 依例體覆.

19) 《至正條格》〈斷例 廢庫〉 § 389 [醃造鹽梅] 福建鹽運司捉獲林勳鹽梅, 輒轉指攀收買私鹽用度. 雖有取到招伏, 別無真正榷貨. 擬合革撥, 改正踈放, 已籍財產給主. 運司擅斷懷安縣官吏, 終是招贓明白. 今後干碍官吏取受, 發付廉訪司歸結, 運司無得似前擅斷.

2. 元代の 소금 專賣制

1) 소금의 생산

소금을 만드는 인부는 ‘竈戶’라고 불렀다. 조호들은 각 지방의 鹽場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工本’이라고 하는 급여를 지급 받았다. 공본은 行省에서 파견한 관원이 직접 염장에 가서 이름을 부르고 나누어 주는 데, 행정에서 운사관에게 공문을 보내면 곧바로 심사하고 廉訪司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例에 의거해 심사하였다. 또한 돈을 나누어줄 때 운사의 관원과 이전 등은 간섭하거나 저지하지 못하였다.²⁰⁾

소금의 생산 설비로는 枰(반)과 竈(조) 등이 필요하였다. 枰은 해수의 염도를 높여 만든 간수(鹵水)를 끓여서 소금 결정을 만들기 위한 쟁반 모양의 넓은 솥이다. 이 위에 비바람을 막기 위한 지붕을 지어서 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竈가 2개 내지 3개 모여 하나의 團을 이루었다. 團 주위에는 사임을 막고 자연 재해 등으로부터 소금 생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을 쌓고 군인이 지키게 하였다.²¹⁾ 團에서 소금을 만들면 각 戶에서 날마다 얼마만큼의 소금을 만들었는지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團에서 소금을 창고로 운반하는 시각을 정하여 두고 때가 되면 군인의 우두머리가 차례대로 창고로 호송하였다. 따라서 만약 창고로 호송하는 시각을 어기면 군인 두목을 거리의 원근과 시간의 늦음을 참작해서 심문하고 처분하였다. 이곳의 군관과 군인들은 竈戶 등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1차례씩 교체되었고, 위와 같이 소금 생산과 관련하여 호송 시각 위반 등의 잘못이 있으면 運司가 직접 보고 및 처리하는 권한을 가졌다.²²⁾

20)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6 [私鹽罪賞] ② 運司竈戶工本，從行省選委有司廉幹官員，親詣各場，從實唱名給散。割付運司官隨即體覆，行移廉訪司，依例體覆。若有侵欺剋落，並依枉法追斷。散錢之際，運司官吏人等毋得干預沮壞。

21) 《熬波圖》〈卷上 各團竈座〉歸併竈座建團立盤，或三竈合一團，或兩竈為一團，四向築壘圍牆，外向遠匝濠澗團，內築鑿池井盛貯鹵水，蓋造鹽倉枰屋置闕立鎖復撥官軍守把巡警。

22)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6 [私鹽罪賞] ⑩ 各團煎到鹽貨，置立文簿，將各戶日辦鹽數附寫，定立出團到倉時刻，輪差軍人頭目，互相照略管押，赴倉交納。如是過違時刻，將軍人頭目，斟酌遠近遲慢，隨時究治。……軍官、軍人壹年壹次調換。今後倘有過期違犯，合令運司申明究問。

2) 소금의 판매

元나라의 소금 전매 제도는 국가가 직접 소금을 판매하는 ‘食鹽法’과 상인들이 소금의 유통 및 판매를 책임지는 ‘行鹽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되었다. 식염법은 물가의 조정에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행염법을 시행하였다. 곧 元代의 소금 전매는 食鹽法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상인들을 통해 유통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유통이 아니라 국가가 판매처를 지정한 계획적 유통이었다. 이는 특히 생산량이 많지 않은 迤北, 上都, 興和, 大同, 遼陽 등지의 소금이 경계를 넘어가 인근의 大都와 같은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²³⁾

行鹽法은 中書省 戶部에서 각 지역의 소금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소금 판매 허가장인 鹽引을 인쇄하고 이것을 각 지방에 분급하면, 지방에서는 상인들에게 이 염인을 판매하고, 상인은 구입한 염인을 가지고 염장에 가서 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염인에는 소금 판매 상인의 성명과 판매 지역을 기입하였다. 그리고 1引당 소금 400근을 염장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과 염인의 관리 및 소금 판매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이 위반 시의 형벌 규정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염인의 앞면 위에는 상인의 성명과 날짜를 양식에 맞추어 적고 상인에게 勘合²⁴⁾해 줄 때 千字文의 글자로 번호를 적는다. 그리고 상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해당하는 府·州·縣에 내려 보낸다. 상인이 염장에서 소금을 받을 때는 자른 염인을 비교·대조한 다음 검사를 마친 소금 포대와

23)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⑧ 迤北、上都、興和、大同、遼陽等處所產鹽貨，諸人不得負載犯界，前來大都等處食用。

24) 勘合은 문서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 장의 문서에 印을 찍고서 그 문서를 나누는데 잘린 면을 맞추어 보고서 진위를 판단하였다. 鹽引은 그 자체로 소금이라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범죄에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염인의 뒷면인 ‘引紙’는 상인이 정당한 권리자의 증빙으로서 간직하고, 앞면인 ‘引根’은 관에서 대조할 목적으로 간수하였다. 염인의 감합에 대해서는 曾仰豐, 앞의 책, 15면 참조.

함께 상인에게 지급하였다.²⁵⁾

이렇게 하여 상인이 소금과 그 염인을 가지고 판매 지역에 가서 판매를 마치면 그 염인은 다시 지방의 民官에 반납하였다. 그러면 관에서는 상인이 반납한 염인과 관에서 보관한 염인의 나머지 부분 및 판매 장부를 대조하고, 이상이 없으면 염인의 내용을 지우고 運司에게 보냄으로써 소금의 판매 업무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체 과정 가운데 元나라는 《至正條格》에 등장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전매 제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Ⅲ.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

《至正條格》에는 斷例의 廐庫 부분에 염법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권 9부터 권12까지 총 4권 분량으로 이루어진 廐庫에는 소금 이외의 茶, 철 등 전매품이나 가축, 화폐 등 경제 영역에 관한 형사적 규정이 실려 있는데, 그 중 권11은 오로지 염법 관련 조항만이 담겨 있다. 제363조부터 제392조까지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至正條格》의 염법은 중요 조항의 순서대로 나열된 듯하지만,²⁶⁾ 여기에서는 행위의 주체 및 규정된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① 판매자 및 운송자, ② 관리자, ③ 생산자라는 순서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25) 《元典章》〈戶部 卷8 鹽課〉[改造鹽引] 於引背上墨印批鑿“某路某客赴某場支查官鹽，一引重四百斤”，用運司印信關防，及於引面上填寫客旅姓名・年月一切完備，隨時倒給勘合，開寫引抄字號，行下合屬，照依鹽法斤重，挨次查鹽。每日將查訖鹽袋，於鹽引背上分朗大字批寫“某客於某年月日某場查鹽出場”，比對勘合，抄寫字號相同，將引給付客旅。

26) 부분적으로는 반포된 시간 순서에 따르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은 분명 아니며, 황제의 성지를 언급한 부분이 중간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는 법령의 位格을 중시한 것도 아닌 듯하다. 다만 앞 조문에는 私鹽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뒤에서는 소금으로 절인 부산물이나 구체적 인명이 거론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항의 중요도 순으로 편집되었다고 추론하였다.

1. 판매자 및 운송자 대상 조항

1) 私鹽罪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소금 판매 허가증인 鹽引을 구입하여 지급받은 소금은 官鹽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사적으로 소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바로 私鹽이다.²⁷⁾ 다른 염법 범죄 유형의 처벌 조항에 있어서도 사염죄를 기준으로 가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염법에 있어서는 사염죄가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至正 2년(1342) 이전의 사염죄

中統 2년(1261) 6월에 元 世祖가 내린 聖旨에서는 사염을 저지르면 과도 2년 결장⁷⁰으로 처벌하였고 재산의 절반은 관에 몰수하였다. 장을 때린 후 鹽司로 보내서 족쇄를 채우고 노역을 시키며 기일을 채워야 놓아주었다.²⁸⁾ 이것이 元代 초기에 등장하였던 사염죄의 처벌 조항이다.

鹽法에 있어서 기본범죄가 되는 私鹽은 《元典章》에 동일한 내용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至元 13년(1277)의 江南諸色課程조,²⁹⁾ 至元 29년(1292)의 立都提舉司辦鹽課조에서³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법전 편찬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관부의 문서를 모두 기록한 騰錄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덕분에 13세기에는 초범의 처벌 규정만 있었던 사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延祐 6년(1319)의 鹽法通例조에는 재범과 3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나타난다. 즉

27) 사염 행위로 발생한 소금은 ‘權貨’라는 용어로 호칭되고 있다. ‘權貨’는 ‘전매품목’이라는 용어가 의미상 맞다고 생각되지만, 《至正條格》〈斷例 廢庫〉에서는 官鹽의 경우에는 쓰지 않고 사염 행위의 증거물로서의 소금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범법 물자’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28) 《元典章》〈戶部 卷8 課程〉[恢辦課程條畫] 中統二年六月, 欽奉皇帝聖旨:“……諸犯私鹽者, 科徒二年, 決杖七十, 財產[一半]沒官. 決訖, 發下鹽司帶鍊居役, 滿日疏放.”

29) 《元典章》〈戶部 卷8 課程〉[江南諸色課程] 犯私鹽酒麴貨者, 科徒二年, 決杖七十, 財產一半沒官. 決訖, 發下鹽司帶鍊居役, 滿日疏放. 若有告捕得獲, 於投官[物]內一半充賞.

30) 《元典章》〈戶部 卷8 鹽課〉[立都提舉司辦鹽課] 諸犯私鹽者, 照依已降聖旨, 科徒二年, 決杖七十, 財產一半沒官. 決訖, 發下鹽司帶鍊居役, 滿日疏放. 若有人告捕得獲, 於投官物內一半充賞.

초범의 경우 과도2년 결장70에 처하는 것은 같지만, 정범인 사염 범인이 재차 사염을 저지르면 1등을 가중하여 장80으로 단죄하고 복역시키며, 3번째 범위를 저지르면 장형의 집행을 마치고 먼 변방의 屯田으로 보낸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³¹⁾

(2) 至正 2년(1342)의 사염죄

그런데 至正 2년(1342) 중서성에서 상주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은 단례에는 사염의 경우 장80 도2년에 처하도록 조정되었다. 복역을 마치면 문 위에 붉은 진흙으로 칠하고 큰 글씨로 “違犯私鹽經斷賊徒(사염을 범하고 형을 받은 도적)”라는 8 글자를 써 놓았으며,³²⁾ 사염을 저지른 전과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즉 관에서는 성명을 기록하고 巡捕 등의 관원이 매월 한 차례씩 인명을 점검하여 다스리는데 잘못을 고치도록 하였으며, 출입왕래하면 반드시 이웃[鄰佑]과 社長³³⁾을 시켜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³⁴⁾ 그리고 재범은 장90 도3년에 처하고, 이마에 “鹽徒³⁵⁾”라는 사방 1촌 크기의 글자들을 새겼다.³⁶⁾ 3범의 경우는 장100에 처하고 멀리 유배 보냈다. 그 유배지는 염도를 단죄한 곳이 만약 兩淮·兩浙·福建·四川의 運司, 廣東·廣海의 提舉司에 해당하면 누르간³⁷⁾으로 유배 보내고, 山東·河間·陝西의 운사에

31) 《元典章》〈戶部 卷8 鹽課〉[鹽法通例] 諸犯私鹽者, 科徒二年, 決七十, 財產一半投官. 決詣, 發下鹽場鑛役. ……正犯鹽徒再犯, 加等斷罪, 居役. 三犯, 斷言志, 發付邊遠屯田.

32)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① 今後諸犯私鹽者, 初犯杖捌拾, 徒貳年. ……正犯鹽徒斷配訖, 於門首紅泥粉壁, 大字書寫: “違犯私鹽, 經斷賊徒.” 捌字.; 이 8 글자는 《元典章》의 大德 4년(1300) 규정에는 문 위에 쓰는 글자가 “犯鹽經斷賊徒” 6자라고 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元典章》〈戶部 卷8 鹽課〉[新降鹽法事理] 敗獲鹽徒, 多係累經配斷, 視為尋常, 不改前過. 一番事發, 一遍詐人, 諸場富上實戶·有司殷實農民, 多被妄行通指. 此等之徒, 紛亂准甸. 今後犯鹽經斷賊徒, 各於門首粉壁, 大字書寫“犯鹽經斷賊徒”六字, 官為籍記姓名. 責令巡尉·捕盜等官, 每月一次點名撫治, 務要改過, 則求生理. 出入往還, 須使鄰佑得知. 三日之外不歸者, 即報捕盜官究開. 三年不犯, 鄰佑保舉, 方許除籍.)

33) 社長: 원대에는 50여 가구를 묶어 1社로 만들었다. 여기에 社長이라는 우두머리를 세워 이들을 관리 및 감시하도록 하였다.

34)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① 官為籍記姓名, 令巡捕等官每月壹次點名撫治, 務要改過. 出入往還, 須使鄰佑社長保申

35) 鹽徒: 사염 등의 범위를 저질러 염법을 어긴 무리라는 뜻이다.

36)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① 再犯杖玖拾, 徒參年. 仍額刺“鹽徒”貳字, 每字各方一寸.

해당하면 廣海로 유배 보낸다고 규정하였다. 그 나머지 여러 곳의 경우에는 軍民官司가 위 항의 염도를 잡으면 그 관사의 담당 관리에게 곧바로 추문하여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運司와 分司³⁸⁾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고 바로 귀 단하도록 허락하였다. 만약 분사가 멀리 있거나 이미 本司로 돌아갔거나 분사가 없는 곳이면 總司³⁹⁾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고 똑같이 처단하였다.⁴⁰⁾ 사염의 발생이 늘어나자 이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범과 3범의 경우 가중 처벌하게 되자, 그 범죄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두 사면 받은 뒤의 횟수로 계산하도록 하였다.⁴¹⁾ 이것은 사염 범죄의 절대적인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하여 관대한 형벌 집행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된다.⁴²⁾

(3) 증거 부족

사염이 발생했는데 범인만 있고 증거물인 소금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았다. 반대로 범인은 없고 범법 물자인 소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금만 관사로 운반하였다.⁴³⁾ 증거물도 없이 사염 범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사

37) 누르간: 노아간[奴兒干]이라고도 하며 북방 黑龍江 유역에 있었던 여진족의 방어 초소이다.(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노아간(奴兒干)’ 항목 참조.)

38) 分司: 여기에서 分司는 運司의 소금 전매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관원의 수를 늘리고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자 파견한 관사 및 관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元史》〈卷20 成宗本紀3〉以兩淮鹽法澀滯, 命轉運司官兩員分司上江以整治之, 仍頒印及驛券.; 《元史》〈卷26 本紀 仁宗3〉增河東·陝西鹽運司判官一員, 給分司印二.) 元代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大明會典》에는 都轉運鹽使司 아래에 鹽場을 통할하는 分司를 설치한 규정이 보인다.

39) 總司: 여기에서 總司는 行省을 지칭한다.《元史》〈卷4 世祖本紀1〉故內立都省, 以總宏綱; 外設總司, 以平庶政.)

40) 《至正條格》〈斷例 廢庫〉§ 366 [私鹽罪賞] ① 參犯杖壹伯, 流遠. 須據赦後爲坐. 所斷鹽徒, 如係兩淮·兩浙·福建·四川鹽運司, 廣東·廣海提舉司者, 長流奴兒干, 山東·河間·陝西運司者, 長流廣海. 其餘諸處軍民官司捉獲上項鹽徒, 並聽有司隨即追問明白, 申准運司·分司, 就便歸斷. 如分司寫遠, 或已還司, 及無分司去處, 申准總司, 依上處斷.

41) 《至正條格》〈斷例 廢庫〉§ 366 [私鹽罪賞] ① 須據赦後爲坐.

42) 唐律에 기원한 ‘赦後爲坐’의 寬刑의 성격에 관하여는 한상권, 「세종대 치도론(治盜論)과 『대명률』 - 절도삼범자(竊盜三犯者) 처벌을 둘러싼 논변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5(한국역사연구회, 2007), 27-57면 참조.

43) 《元史》〈卷104 刑法志3〉[食貨] 有權貨, 無犯人, 以權貨解官; 無權貨, 有犯人, 勿問.

염범의 체포 횟수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군관의 예에 비추어⁴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엄정한 행형 절차를 위해 범법 물자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이 언제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至正條格》의 無權貨不坐조에 大德 10년(1306) 山東鹽運司에서 가액을 지급하고 사염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소금을 얻지는 못한 경우에 사염죄로 보고 장70을 집행하고 족쇄를 차고 복역시키며 재산의 절반을 몰수한 사안에 대해 刑部에서는 ‘無權貨例’에 비추어 판결 내리지 않았으니 잘못 판결했다고 논의한 내용이 있다.⁴⁵⁾ 이것을 볼 때 증거 물인 범법 물자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1306년 이전에 출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판매 전 사염

또 《至正條格》에는 사염을 구매하고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형만 집행하고 재산의 몰수와 노역에 배정하는 부가형은 면제했음을 알려주는 규정이 있다. 즉 私鹽遇革라는 이름의 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至治 2년(1322) 7월, 형부의 議得⁴⁶⁾: “강철성의 호도이가 손복이를 규합하여 함께 본전을 내고 사염 2리을 사들이면서 배를 이용해 신고 산골로 가서 판매하려고 하다가 붙잡혀 관에 이르렀다. 만약 모두 과죄한다고 헤아린다면 결국 범죄는 변경 전에 있었고 발각은 변경 후에 있었으며 이미 획득한 범법 물자가 관에 이르렀는데, 발견된 것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 죄만 처벌하고 재산을 적몰하고 노역에 배정함은 면제하여 준다.” 중서성에서 승인하였다.⁴⁷⁾

44) 본고 III. 2. 3) 포상 규정 참조.

45) 《至正條格》〈斷例 廩庫〉 §372 [無權貨不坐] 大德十年八月, 御史臺呈: “山東鹽運司樂鹽司結案, 申解到犯私鹽人馬伴哥等, 各執桿棒、鞭槍、弓箭, 邀趕驢畜前來固堤場峯臺, 與訖寵戶王興兒等鈔兩, 回買鹽貨, 未曾得鹽, 被捉到官。其山東運司不行申稟刑部, 又不照無權貨例歸斷。輒將馬伴哥等九名, 各杖柒拾, 發下樂鹽司帶鑱居役貳年, 滿日踈放。籍沒訖壹半家產。”刑部議得: “馬伴哥等, 雖招買賣私鹽, 未曾交付, 別無所獲權貨, 例合革撥。山東運司輒將各人杖斷柒拾, 財產壹半沒官, 發下居役, 事屬違錯, 擬合改正踈放, 回付元斷財物。官吏違錯, 依例取問。”都省准擬。

46) 議得: 논의한 결과임을 나타낸다.

47) 《至正條格》〈斷例 廩庫〉 §377 [私鹽遇革] 至治二年七月, 刑部議得: “江浙省胡道二糾合孫福二,

至順 2년(1331) 8월, 형부의 議得: “변경 전에 사염을 판매하고 변경 후에 판매하지 않았으며 지수하고 폐기시켰으면 변경(된 조항을 적용)함이 합당하다고 헤아려진다. 숨기고서 지수하지 않고 범법 물자가 현존하면 그 죄만 처벌하며, 재산을 적몰하고 노역에 배정함은 모두 면제한다. 그리하고서 판매하면 예에 의거해 추단한다.” 중서성에서 승인하였다.⁴⁸⁾

위의 내용에 따라 사염법의 변경 내용을 유추해 보면, 사염을 판매하기 전에 지수하고 사염을 폐기시키면 처벌하지 않고,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사염이 현존하면 장형만 집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똑같이 사염법으로 처벌하였던 듯하고, 이러한 변경 내용이 어느 한 시기나 또는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2) 鹽引 관련 조항

鹽引은 상인이 염장에 가서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는 허가증이자 정식으로 소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이기도 했다. 소금 전매 제도에 있어서 소금을 관에서 판매하고 상인이 유통시키는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염인이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염인에 새겨진 내용은 황제의 聖旨를 받들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은 《至正條格》에서 鹽法 조항의 가장 앞에 위치해 있다.

(1) 鹽引 偽造

鹽引을 위조하면 斬刑에 처했다.⁴⁹⁾ 徒刑으로 처벌한 사염죄와 비교하여도 무척 엄격하였고, 전체 염법 조항에 있어서도 사염법이 항거 중 사람을 상해

同出本錢，買到私鹽貳引，用船裝載，欲往山鄉貨賣，被捉到官。若擬全科，終是犯在革前，發在革後，既獲權貨到官，合理見發，止坐其罪，與免籍配。”都省准擬。

48) 《至正條格》〈斷例 廩庫〉 § 378 [私鹽遇革] 至順二年八月，刑部議得：“革前買販私鹽，革後未曾貨賣，告首棄毀，擬合革撥。匿而不首，權貨見在者，止坐其罪，并免籍配。因而貨賣，依例追斷。”都省准擬。

49)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3 [鹽課] ① 偽造鹽引者皆斬。

한 경우의 處死와 더불어⁵⁰⁾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이것은 염인의 판매가 국가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원나라의 상황에서 염인의 위조가 직접적인 국익의 침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 상인의 염인 관리

상인은 소금을 판매하면서 계속 염인을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판매 지역에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소금을 판매하면서 염인을 보이지 않거나, 염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염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다.⁵¹⁾ 본래 정식으로 염인을 가진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염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사염이라는 범죄를 판단하는 가장 큰 척도가 염인의 유무이며, 상인이 염인의 관리를 잘못하면 고의·과실을 막론하고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인 것이다. 그리고 염인의 수 외에 소금을 더 지니고 있어도 물론 사염법에 의해 처벌받았다.⁵²⁾

(3) 犯界鹽貨

鹽引에는 소금의 판매 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이 판매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犯界鹽貨’라고 하여 처벌되었다. 또 제363조 鹽課에는 범계염화의 형벌을 사염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하고, 소금의 절반은 관에 몰수하며 절반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고 규정하였다.⁵³⁾ 그런데 元代의 법률 용어 사전인 《史學指南》에는 ‘犯界’를 단지 “저쪽 경계의 물건이 이쪽으로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만 설명하였다.⁵⁴⁾ 하지만 사염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犯界鹽貨를 단순히 소금이 경계를

50) 《至正條格》〈斷例 廢庫〉§ 365 [私鹽罪賞] ③ 違犯私鹽，捉拏其間拒捍者，流遠。因而傷人者，處死。

51) 《至正條格》〈斷例 廢庫〉§ 363 [鹽課] ⑤ 諸客販鹽，到處如有買人，不呈引發賣者，依私鹽法。
⑦ 客販鹽，引不隨行者，依私鹽法。

52) 《至正條格》〈斷例 廢庫〉§ 363 [鹽課] ⑥ 諸客販鹽，引數外夾帶者，依私鹽法。

53) 《至正條格》〈斷例 廢庫〉§ 363 [鹽課] ② 犯界鹽貨，許諸人捉拏，減私鹽罪壹等。其鹽壹半沒官，壹半付告人充賞，應捕人亦同。

54) 《史學指南》〈卷7 錢糧造作〉犯界 謂彼境之物越入本界也。

넘어가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형벌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인이 염인을 지닌 소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넘어가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염인이 없는 소금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염법으로 처벌하였고, 염인이 있고 정식으로 입수한 소금이지만 판매 지역을 넘어가는 경우 사염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한 것이다. 다만 식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가는 소금은 처벌하지 않았다.⁵⁵⁾ 《至正條格》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元典章》에는 이에 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이 있다. 즉 식용으로 쓰려고 소지한 소금이 경계를 넘어간 경우 “경계를 넘어가 소금을 판매하는 例 [依犯界與販鹽貨等例]”에 의거하여 처벌하면 형벌이 너무 과중하고,⁵⁶⁾ 기존의 條例에서는 별도로 식용 소금이 경계를 넘어간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⁵⁷⁾ 식용 소금 1斤 이하를 지니고 잘못해서 경계를 넘어가면 “사염을 사서 먹은 죄”에서 3등을 감경하여 처벌하고, 2斤 이상이면 “사염을 사서 먹은 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⁵⁸⁾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하면 犯界鹽貨의 구성요건은 소금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가 판매하는 행위가 된다.

소금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에서 지역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졌는데, 판매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며 사염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범계염화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至正條格》의 조문상 모순이 보

55) 《至正條格》〈斷例 廩庫〉 § 371 [犯界鹽貨] 達達怯薛歹每犯着的, 他每壹箇兩箇也問來。近間, 俺商量來。今後除蒙古怯薛歹人每許將帶自行食用的鹽外, 若指着食用爲名, 販賣的, 并換諸物的有呵, 依私鹽法。; 이 조항의 이름은 ‘犯界鹽貨’이지만 범계염화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황제의 친위대인 케식테이[怯薛歹] 부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식용으로 쓰는 소금은 처벌하지 않지만 판매하게 되면 사염법으로 처벌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상인이 아니므로 염인이 없기 때문에 사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염인이 있는 경우가 ‘범계염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6) 《元典章》〈戶部 卷8 鹽課〉 [犯界食餘鹽貨] 除在船食用, 將餘剩鹽一十一兩包藏裙腰, 意圖食用, 越過巴東縣界, 致被盤獲, 秤計蜀鹽七兩。……若比依犯界與販鹽貨等例論罪, 似涉太重。

57) 《元典章》〈戶部 卷8 鹽課〉 [犯界食餘鹽貨] 緣元降條例內別無定到食鹽犯界罪名。

58) 《元典章》〈戶部 卷8 鹽課〉 [犯界食餘鹽貨] 今後若有客旅將帶食鹽一斤之下, 誤兩過犯, 減買食私鹽罪三等; 二斤之上者, 減買食私鹽一等科斷相應。

인다. 먼저 鹽課조에서는 사염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하고, 소금의 절반은 관에 몰수하고 절반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고 규정하였다.⁵⁹⁾ 至正 2년 이전의 사염법에 의하면 사염죄는 과도2년 결장70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 1등을 감경하면 장60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至正 2년 이후로는 장80 도2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장형 집행의 경우는 70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私鹽罪賞조에서는 염인이 있는 관염을 해당 행염 지역에 한하여 판매하지 않고 돌려서 다른 경계를 넘어가 판매하면 장60에 처하며 소금의 가액은 모두 관에 몰수한다고 하였다.⁶⁰⁾ 또 迤北, 上都, 興和, 大同, 遼陽 등지의 소금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가 大都 등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경계를 넘어가면 장60에 처하고 소금은 관에 몰수하였다.⁶¹⁾ 이것도 역시 犯界鹽貨와 동일한 행위양태의 처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염죄에서 1등을 감경하여 장70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과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60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굳이 수록함으로써 犯界鹽貨의 형벌은 예전대로 고정시키겠다는 입법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입법의 모순 내지 문자의 오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犯界鹽貨의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서는 도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가적으로 도형의 경우는 鹽課조에서 판매지역을 위반하는 사람도 조문에 따라 단죄하는 외에 사염과 같이 범인을 염장으로 보내 염부로 충당하고 족쇄를 채워 노역을 시키며, 기일을 채우면 놓아준다고 하였다.⁶²⁾ 그러므로 私鹽罪賞조에서는 기본형인 장형만 언급하고 鹽課조에서는 부가형인 노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도 노역 기간이 얼마

59) 《至正條格》〈斷例 廩庫〉§ 363 [鹽課] ② 犯界鹽貨，許諸人捉拏，減私鹽罪壹等。其鹽壹半沒官，壹半付告人充賞，應捕人亦同。

60)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① 諸人將有引官鹽，不於拘該行鹽地面發賣，轉於別境犯界貨賣者，杖陸拾，鹽價俱沒官。

61)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⑧ 迤北、上都、興和、大同、遼陽等處所產鹽貨，諸人不得負載犯界，前來大都等處食用。違者，杖陸拾，鹽沒官。

62) 《至正條格》〈斷例 廩庫〉§ 363 [鹽課] ⑧ 犯私鹽并犯界鹽貨之人，除依條斷罪外，擬將犯人發下鹽場，充鹽夫，帶鍊居役，滿日踈放。

나 되는지는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범계염화의 경우 일반 백성들이 직접 체포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고발인에게 주는 포상 규정은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에게도 적용되었다.⁶³⁾ 사염의 경우 염법을 담당하는 관리에게만 체포 권한을 준 것은 다른 사람의 무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죄없는 일반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반면 犯界鹽貨는 확실한 물증인 다른 지역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체포를 허용함으로써 엄격히 금지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운송인 등 범죄

소금의 운송에 관여하는 사람은 사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는데 사염범과 똑같이 처벌하기에는 위법성이 보다 작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따로 규정하였다. 짐꾼[挑擔]·마소물이꾼[撐載]·위탁업자[受寄]와 중개 행위를 한引領(상인회의 수령)은 사염 판매의 경우 정범에 견주어 1등을 감경하였다. 만약 샅을 받고 메거나 실어 운반하는데 사염을 잠시 맡은 것이면 사염을 사서 먹은 사람에 견주어 또 1등을 감경하였다.⁶⁴⁾

또한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船戶가 소금을 실어 운반하는데 그 소금을 훔쳐서 임의로 빌려주거나 판매한 경우는 사염법에 의해 처벌하였다.⁶⁵⁾ 절도죄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염법과 관계된 것이므로 사염법으로 처벌한 것이다. 元代의 절도죄는 大德 연간과 延祐 연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제·개정되었다. 먼저 大德 6년(1302)에 규정된 절도죄는 모의했으나 실행하지 않으면 47에,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으면 57에, 훔친 재물이 10貫 이하이면 67에, 20관에 이르면 77에 처하고, 매 20관

63) 《至正條格》〈斷例 廩庫〉§ 363 [鹽課] ② 犯界鹽貨，許諸人捉拏，減私鹽罪壹等。其鹽壹半沒官，壹半付告人充賞，應捕人亦同。

64) 《至正條格》〈斷例 廩庫〉§ 376 [受寄私鹽] 挑擔、撐載、受寄，并引領爲牙，貨賣私鹽者，比之正犯減等。若受雇倩挑載，寄放私鹽者，比買食人又減壹等。

65) 《至正條格》〈斷例 廩庫〉§ 380 [船戶偷跑客鹽] 載鹽船戶，偷跑客鹽，轉賣諸人與販。若准盜論，終是事干鹽法。今後犯人俱各照依私鹽例，一體全科，止理見發之家。

마다 1등을 가중하였으며, 100관이 되면 도1년에 처하고, 매 100관마다 1등을 가중하되 도3년까지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⁶⁶⁾ 그리고 延祐 2년(1315)에는 300貫 이상이면 107에 처하고 군인으로 보내며, 100관 이상이면 107에 처하고 도3년을 부과하며, 80관 이상이면 97에 처하고 도2년반을 부과하며, 60관 이상이면 87에 처하고 도2년을 부과하며, 40관 이상이면 77에 처하고 도1년반을 부과하며, 10관 이상이면 67에 처하고 도1년을 부과하며, 10관 이하이면 67에 처하고 놓아주었다. 또 모의했으나 실행하지 않으면 47에,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으면 57에 처하는 것은 大德 연간의 규정과 같았다.⁶⁷⁾

하지만 船戶의 소금 절도를 절도죄가 아닌 사염죄로 처벌한 것은 물품 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소금의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도죄에 규정되어 있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증거물인 범법 물자가 발견된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규정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선호로부터 소금을 받은 자는 사염을 판매한 죄에 견주어 처벌하였다. 《至正條格》 船戶盜賣客鹽조에는 다음과 같이 사례가 실려 있다.

兩淮 運司의 선호 곽철이는 상인 이신보가 소유한 官鹽 310석을 실어 운반하면서 사사로이 전철일 등에게 소금 20인을 빌려주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에게 38인을 팔았다. 곽철이는 사염의 예에 의거해 단죄하고 전철일 등은 사염판매에 견주어 단죄한다.⁶⁸⁾

66) 《元典章》〈刑部 卷11 諸盜1 強竊盜〉[強切盜賊通例] 諸切盜:始謀未行者四十七, 已行而不得財五十七, 十貫以下六十七, 至二十貫七十七, 每二十貫加一等, 一百貫徒一年, 每一百貫加一等, 罪止徒三年.

67) 《元典章》〈刑部 卷11 諸盜1 強竊盜〉[處斷盜賊斷例] 偷財物賊人, 三百貫以上者斷一百七·出軍, 一百貫以上者斷一百七·徒三年, 八十貫以上者斷九十七·徒二年半, 六十貫以上者斷八十七·徒二年, 四十貫以上者斷七十七·徒一年半, 十貫以上者斷六十七·徒一年, 十貫以下者六十七·斷放. 為從者, 皆減一等斷配. 以至元鈔為則. 又:已行而不得財者斷五十七, 始謀而未行者四十七, 斷放.

68) 《至正條格》〈斷例 廩庫〉§ 379 [船戶盜賣客鹽] 兩淮運司船戶郝七二, 攬載客人李信甫有引鹽貨參伯壹拾引內, 私自借與錢七一等鹽貳拾引, 及賣與不得名客人參拾捌引. 郝七二依私鹽例斷罪, 錢七一等比賣私鹽斷罪.

2. 관리자 대상 조항

기본적으로 運司에서는 매달 私鹽의 발생 횟수와 처리한 관원의 직명을 中書省 戶部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잘못된 내역이 있으면 표지로 붙여서 올리도록[標附] 되어 있었다.⁶⁹⁾ 사염의 보고가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항시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는 이것의 처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실제로 사염 범죄의 발생이 어느 정도 빈번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관리가 소금 전매 제도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부정은 사염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至正條格》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감독 실패

私鹽이나 犯界鹽貨가 발생하면 그 처벌은 관리에게까지 미쳤다. 염법을 감찰하는 管民官이 신경 써서 금지하고 다스려 잡아내지 않아 사염과 犯界鹽貨가 있게 되면, 발생한 범죄의 수에 따라 초범은 태40에, 재범은 장80에 처하며, 3범은 장100에 처하고 제명하였다. 그리고 범인과 함께 짜고서 임의로 놓아주면 범인과 같은 죄로 처벌받았다.⁷⁰⁾

소금 생산지인 鹽場에서 사염이 발생하면 그 관원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았다. 염장관이 감찰에 실수하면 초범은 등급을 더해 태50에 처했던 것이다. 초범만 가중 처벌하고 재범 이후로는 처벌이 똑같아서 재범은 장80에 처하며, 3범은 장100에 처하고 제명하여 추탈하였다. 그 외에 소금 생산과 관련되어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염장관, 창고관, 운송을 감독하고 제염 설비를 관리하며 소금을 굽는 곳의 우두머리·火甲,⁷¹⁾ 團을

69)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⑤ 仍每月具斷訖私鹽起數、官員職名, 申呈省部, 標附過名。

70)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② 管民提點正官, 常切提調關防, 仍排門粉壁, 嚴加禁治, 毋致私鹽、犯界鹽貨生發。如不爲用心禁治捉拏, 致有私鹽、犯界鹽貨, 初犯笞肆拾, 再犯杖捌拾, 參犯杖壹伯, 仍除名。通同縱放者, 與犯人同罪。

71) 火甲: 호적제도의 단위이며 또한 그 우두머리를 가리키는데 元代에 이미 시행되었고 明代까지 이어진다.

과수하는 군관·군인이 사정을 알면서 소금을 판매하면 범인과 동일하게 과죄하였다.⁷²⁾

감독 실패로 인한 처벌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民官 중 염법을 감찰하는 正官에게 미쳤고, 이는 치안을 담당하는 捕盜 등의 관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私鹽이나 犯界鹽貨가 혐요지인 把隘 지역을 지나가면 그곳을 지키는 군관과 군인들까지 처벌받았다. 이때는 運司가 판결하고 처벌을 내리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감독에 실패한 관원의 관직과 명칭은 사염이 발생한 횡수와 함께 中書省의 해당 部에 보고되었고, 民官은 임기가 만료되는 날에, 그리고 軍官은 3년에 1차례씩 해당 임기 내의 자료를 합산하여 인사 고과의 증빙 자료로 삼았다.⁷³⁾

萬戶와 千戶 등의 군관도 역시 사염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했다. 至正 2년(1342)의 규정에서 民官과 巡捕官⁷⁴⁾ 외에 군관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다. 곧 실수해서 관할 지역에 사염이 발생하면 직접 관리하는 百戶는 舊例에⁷⁵⁾ 의거하여 처벌하고, 천호는 5번 이상 발생하거나 만호는 10번 이상 발생하면 백호 초범의 예대로 단죄하였다. 진수하는 둔영 안에 거주하는 군인이 사염을 범함이 있으면 직접 관리하는 백호와 염법을 감찰하는 담당 관원까지 범죄한 군인과 똑같이 처벌하였다. 천호는 그 죄에서 2등을 감경하고, 만호는 진술서를 받고 이것을 중서성에 올려서 결정한다. 이하 나머지 인원은 각각 정해진 例에 따라 처벌하였다. 團을 지키는 군관과 군인이

72)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⑥ 場官失覺察者, 初犯加等答伍拾, 再犯杖捌拾, 參犯杖壹伯, 除名追奪。即場官、倉官, 監運團竈煎鹽去處頭目、火甲、把團軍官、軍人, 知情貨賣者, 與犯人一體科罪。; “場官·倉官, 監運團竈煎鹽去處頭目·火甲·把團軍官·軍人, 知情貨賣者” 부분은 모두 병렬적 구조로 보고 번역하였다.

73)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5 [私鹽罪賞] ⑤ 凡獲私鹽、犯界鹽貨, 須先挨問私煎販賣去處, 罪及管民提點正官、捕盜等官。經過把隘地面, 罪及鎮守軍官、把隘人等, 如通同作弊, 或有失覺察, 並從運司依條科斷。仍每月具斷訖私鹽起數、官員職名, 申呈省部, 標附過名。管民官任滿之日, 管軍官參年壹次, 通具任內失過、私鹽起數, 開申, 以憑黜降。

74) 《吏學指南》에 따르면 捕盜官은 절도가 발생한 지역의 관원을 말하고, 巡捕官은 지역에 관계 없이 순찰하고 체포하는 관원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吏學指南》〈卷1 官稱〉 捕盜官 謂失盜去處當該之官也。巡捕官 謂不分地面, 包括巡捕之官也。

75) 어떤 例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초범·재범·3범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民官의 처벌례를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함께 짜고서 사염을 놓아 보내면 범인과 같은 죄이다. 이 과정에서 받은 뇌물이 많으면, 재물을 수취하고 이로 인해 법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 枉法으로 추단하였다.⁷⁶⁾ 그리고 군인이 사사로이 團과 竈를 떠나 약자인 亭民⁷⁷⁾을 해치며 단의 주위를 숙직 서지 않으면 군관과 염장관이 바로 단죄하였다.⁷⁸⁾

迤北, 上都, 興和, 大同, 遼陽 등 지역은 소금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소금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龍鎮衛⁷⁹⁾는 각처의 혐요지와 항구 등을 파수하는 군관과 군인을 엄격히 감독하여서 특별히 그 지역의 犯界鹽貨를 감시하였다. 만약 신경 쓰지 않아 소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해당 군관과 군인을 초범은 태40에, 재범은 장80에 처하며, 3범은 장100에 처하고 제명하였다. 여기에서 초범·재범·3범과 같은 범죄 횟수의 계산은 만약 황제의 사면을 받았다면 사면 받은 뒤에 발생한 수만으로 처벌되었다.⁸⁰⁾

76) 《至正條格》〈斷例 廩庫〉§ 366 [私鹽罪賞] ④ 私鹽巡禁不嚴，除州縣親臨提點鹽法正官，及巡捕等官，已有斷罪定例。……失過私鹽，親臨百戶依舊例斷決。千戶伍起之上，萬戶拾起之上，依百戶初犯例斷罪。其鎮守屯營內居住軍人有犯私鹽，親臨百戶與有司提點鹽法官一體科斷。千戶減罪貳等，萬戶取招呈省定擬。已下人員依例究治。其守團軍官、軍人，通同縱放私鹽，與犯人同罪。贓多者，以枉法追斷。

77) 亭民: '亭戶'라고도 하며 소금을 생산하는 鹽戶의 일종이다.唐代에 소금을 만드는 지역을 亭場이라고 부른 데에서 연유한다.宋代 이후로 소금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먼저 지급 받고 소금이 생산되면 관에 납부했던 鹽稅를 특별히 지칭하였다. 佐伯富, 『中國鹽政史の研究』, 京都: 法律文化社, 1988, 194면 참조.

78) 《至正條格》〈斷例 廩庫〉§ 366 [私鹽罪賞] ⑩ 軍人私離團竈，擾害亭民，不宿團圍，軍官、場官就便斷罪。

79) 《至正條格》에는 '龍(lóng)鎮衛'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元나라 군대의 주력 부대로서 황제의 친위 기관이었던 '隆(lóng)鎮衛'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80) 《至正條格》〈斷例 廩庫〉§ 365 [私鹽罪賞] ⑧ 迤北、上都、興和、大同、遼陽等處所產鹽貨，諸人不得負載犯界，前來大都等處食用。違者，杖陸拾，鹽沒官。仍仰龍鎮衛嚴督各處把隘口軍官、軍人，用心關防盤捉。如不爲用心，致有透漏者，當該把隘人員，初犯答肆拾，再犯杖捌拾，參犯杖壹伯，除名。皆以赦後爲坐。

2) 각종 부정

(1) 사염범 도피

民官 가운데 염법을 감찰하는 正官과 關津·渡口에서 수과하는 軍官·軍人·巡尉·弓手人 등이 범인과 함께 짜고서 사염을 놓아 보내면 범인과 똑 같이 사염죄로 처벌하는 例가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가형까지 모두 집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장형만 집행하며 재산을 적몰하고 노역에 배정함은 면제해 주었던 것이다.⁸¹⁾ 이것은 延祐 원년(1314)에 반포된 규정이며 《元典章》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至正條格》의 경우 훨씬 간단하게 압축되고 정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元典章》〈鹽法通例〉에는 염법과 관련하여 새로 내려 온 聖旨에 “관민관 중 염법을 감찰하는 정관과 關津·渡口에서 수과하는 軍官·軍人·순위·궁수인 등은 사염과 犯界鹽貨를 저지른 무리가 도망쳐 빠져나가면 초범은 태40에, 재범은 장80에 처하며, 3범은 장100에 처하고 제명한다. 함께 짜고서 놓아 보내면 범인과 같이 과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兩浙 運司가 재산 몰수와 족쇄 착용 후 노역까지 부과하면 너무 과중하지 않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刑部에서 다만 장형만 부과함이 적당하다고 논의한 결과임을 알려 주고 있다.⁸²⁾ 《至正條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⁸³⁾ 본래의 聖旨 내용은 본문 중에 간접적으로 인용하였던 것이다.⁸⁴⁾

한편 《元史》에는 軍官이 재물을 받고 사염범을 놓아주면 佩符(또는 牌面,

81) 《至正條格》〈斷例 廢庫〉 § 373 [軍民官縱放私鹽] 管民提點鹽法正官、關津渡口守把軍官、軍人、巡尉、弓手人等，通同縱放私鹽者，例與犯人同科。擬合止坐其罪，與免籍配。

82) 《元典章》〈戶部 卷8 鹽課〉 [鹽法通例] 見欽奉聖旨節該：‘管民提點正官·關津渡口守把軍官軍人巡尉弓兵人等，致有私鹽·犯界鹽貨走透私鹽，初犯答四十，再犯杖人十，三犯杖一百·仍除名。通同縱放者，與犯人同罪。’ 前件，照得軍民官員人等通同縱放私鹽，事發到宮，取問是實，照依犯私鹽人應得罪名，將軍民官員人等斷決。外據財產并錄役一節，若依犯人一體抄配，誠為尤重。乞照詳。‘刑部一同議得：管民提點正官·關津渡口守把軍官軍人巡尉弓手人等通同縱放者，既與犯人同科，止坐其罪相應。

83)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5 [私鹽罪賞] ② 참조.

84) 황제의 성지를 함부로 삭제 내지 수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재산 몰수와 노역은 면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성지의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관원 신분의 증빙) 및 받은 임명 문서는 회수하고 범인으로부터 받은 재물의 가액에 따라 枉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延祐 원년(1314) 이전의 처벌 규정으로 추정된다.⁸⁵⁾

즉 1貫 미만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모두 제명시키고 다시 등용하지 않았으며, 받은 재물을 至元鈔⁸⁶⁾로 환산하여 그 가치가 1貫부터 10貫에 이르면 태⁴⁷에, 10貫 위로 20貫에 이르면 태⁵⁷에, 20貫 위로 50貫에 이르면 장⁷⁷에, 50貫 위로 100貫에 이르면 장⁸⁷에, 100貫 이상이면 장¹⁰⁷에 처하였다.⁸⁷⁾ 그런데 枉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사염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자 조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泰定 3년(1326)의 규정을 보면 군관·군인·궁병인 등이 기존에 재물을 받고 사염을 놓아 보낸 정황이 명백한데 처벌을 피해 도망하고 있으면 이미 판결이 성립된 것과 같으므로 파직하고 제명하며 등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⁸⁸⁾ 즉 行爲時法原則에 따라 枉法에서의 ‘除名不敘’라는 처벌을 내린 것이다. 반면 도망간 군관·군인을 붙잡지 못하였는데 도중에 사면을 받으면 원래 지녔던 牌面은 例에 의거해 회수하고, 군관·군인이 받았던 임명·과견 문서와 거두지 않은 돈·물건은 그대로 거두지 않고 두도록 하였다.⁸⁹⁾

(2) 소금 요구

團의 주위와 창고를 지키는 군관과 군인이 염장관·司秤⁹⁰⁾·竈戶 등이 있

85) 《元史》〈卷104 刑法志3 食貨〉諸巡鹽軍官，輒受財脫放鹽徒者，以枉法計贓論罪，奪所佩符及所受命，罷職不敘。

86) 至元鈔：至元寶鈔라고도 하며 元나라 世祖가 紙幣專用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中統寶鈔와 함께 찍어 유통시킨 지폐로서, 그 액면 가치는 5文으로부터 2貫文에 이르는 11종이 있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지원보초’ 항목 참조)

87) 《元史》〈卷102 刑法志1 名例〉[職制上] 諸職官及有出身人，因事受財枉法者，除名不敘；……以至元鈔為則，枉法：一貫至十貫，答四十七，不滿貫者，量情斷罪，依例除名；一十貫以上至二十貫，五十七；二十貫以上至五十貫，杖七十七；五十貫以上至一百貫，八十七；一百貫之上，一百七。

88) 《至正條格》〈斷例 廢庫〉§ 374 [縱放私鹽遇革] 鎮守軍官、軍人、弓兵人等，受財縱放私鹽，衆證明白，避罪在逃，既同獄成，罷職除名，不敘。

89) 《至正條格》〈斷例 廢庫〉§ 374 [縱放私鹽遇革] 根捉未獲，欽遇原免，元帶牌面，依例追納。所受宣、勅，并未招錢物，擬合革撥。

90) 司秤：염장이나 창고에서 소금의 중량을 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司秤이다. 《元史》〈卷97 食貨5〉[鹽法] 凡遇到場裝鹽之時，私屬鹽場官吏司秤人等，重其斤兩，裝為硬袋，出場之後，沿途盜

는 곳에서 권세를 부려 官鹽을 요구하고 사사로이 판매하면 사염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노역에 배정하였다. 자가 소비용 소금이면 1등을 감경하고 소금을 준 사람은 태57에 처하였다.⁹¹⁾ 이 조문 또한 원래의 문서에서 보다 압축된 모습을 보여 준다. 《至正條格》에서는 단순히 戶部와 刑部에서 논의한 결과라고만 되어 있지만 《元典章》에 따르면 兩浙 運司에서 염법의 내용을 문의하면서 건의한 내용을 刑部에서 승인하고 다시 中書省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조문이다.⁹²⁾

(3) 재물 은닉

大德 연간에 陝西省에서 都轉運鹽使의 파견 관리가 私鹽을 적발하고 말과 의복 등의 재물을 몰수했는데 이를 分使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긴 사건이 발생하였다.⁹³⁾ 사염을 적발해야 하는 관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中書省에서는 사염을 적발할 때에는 사염을 조사하는 巡鹽官과 각 지방 관사의 감독관이 함께 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관에 몰수한 돈과 물건은 담당 관리에게 분부하여 합동으로 관리하는 상급 관사에 보고하고 거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⁹⁴⁾ 그리고 刑部는 巡禁하는 인원이 私鹽을 적발하고서 돈과 물건을 몰수했는데 이 사실을 속이고 보고하지 않으면, 그 돈과 물건은 다시 관에 몰수하고 枉法에 따라 처벌한다고 결정하였다.⁹⁵⁾

賣，雜以灰土，補其所虧。及到所赴之倉，而倉官司秤人又各受賄，既不加辨，秤盤又不如法。

91) 《至正條格》〈斷例 廩庫〉 § 375 [官軍乞取官鹽] 守把團圍、倉敖，巡防軍官、軍人，於場官司秤竈戶等處，挾勢乞取官鹽，私下貨賣者，依私鹽法斷配。食用者減等，與鹽之人，答五拾柒下。

92) 《元典章》〈戶部 卷8 鹽課〉 [鹽法通例] “守把團圍倉敖巡防軍官軍人，於場官·司秤·竈戶·滷丁處乞取煎到官鹽。前件，照得在先有軍人索取鹽貨賣，本司申奉省府割付，決杖六十七下，發付本役，依舊當軍。切詳軍官軍人(持)[挾]勢求取官鹽私下貨買者，合無照依私鹽法斷；所食用者，減等斷決六十；與鹽之人，答五十七下。乞賜定奪可否付下。伏乞照詳。”刑部一同議得：依准運司所擬相應。一前件，議得：軍官軍人所犯，依准運司所擬。

93)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4 [追問私鹽欺隱斷沒錢物] 大德三年正月陝西省咨：“都轉運鹽使奏差捉獲私鹽，斷沒馬疋、衣服等物，隱匿分使。”

94)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4 [追問私鹽欺隱斷沒錢物] 都省議得：“今後遇有犯私鹽之家，巡鹽官與各處提點官一同取問明白，欽依聖旨歸斷，即將沒官錢物分付有司，申解合干上司收管。餘准部擬。”

95)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4 [追問私鹽欺隱斷沒錢物] 刑部議得：“巡禁人員若欺隱分使，斷沒錢

至元 3년(1266) 3월에는 王晉, 侍中 和哲斯, 濟南益都轉運使 王明이 소금 전매 수익을 은닉하여 모두 주살되었다.⁹⁶⁾ 위의 조항과 비교해 보면 사염범에게 몰수한 재산을 은닉한 죄보다 소금 전매 수익을 은닉한 것을 무겁게 처벌했음을 알 수 있다.

(4) 工本 횡령

또한 소금을 생산하는 竈戶들의 인건비 등 비용인 工本을 지급함에도 관원이 그것을 빼돌리지 않도록 하였고 여기면 처벌하였다. 우선 行省에서 청렴하고 능력 있는 담당 관원을 선발하여 직접 각 염장에 가서 실제로 이름을 부르고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행정에서 運司官에게 공문을 보내면, 곧바로 심사하고 廉訪司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염방사는 예에 의거해 심사한다. 만약 속여서 빼돌림이 있으면 모두 枉法으로 추단하였고, 돈을 나누어줄 때 운사의 관원과 서리 등은 간섭하거나 저지하지 못하였다.⁹⁷⁾

또 泰定 2년(1325)에는 이미 면제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관리들이 빼돌린 工本 등의 비용은 추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결정되었다. 즉 관원과 이전 등이 비용을 빼돌리고 관에 공본과 돈·물품을 다 보내지 않았는데 규정의 변경으로 면제를 받기 전에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함이 있었으면, 형벌의 집행은 면제를 받고 공본과 돈·물품은 추징하며 직역은 예에 의거해 黜降하였던 것이다.⁹⁸⁾

物, 合依枉法科罪。”

96) 《元史》〈卷6 世祖3〉己未, 王晉及侍中和哲斯·濟南益都轉運使王明, 以隱匿鹽課, 皆伏誅.

97) 《至正條格》〈斷例 廩庫〉§ 366 [私鹽罪賞] ② 運司竈戶工本, 從行省選委有司廉幹官員, 親詣各場, 從實唱名, 給散筭付. 運司官隨即體覆, 行移廉訪司, 依例體覆. 若有侵欺剋落, 並依枉法追斷. 散錢之際, 運司官吏人等毋得干預沮壞. 違者, 嚴加究治.

98) 《至正條格》〈斷例 廩庫〉§ 382 [剋除工本遇革] 諸官吏人等, 剋除剋落銷用, 不盡還官工本錢物, 革前已有招伏, 罪經釋免, 工本錢物擬合追徵, 職役依例黜降.; 여기에서 말하는 ‘釋免’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英宗(1320~1323)은 즉위 후 연호를 至治로 개원하면서 내린 조서에서 면제 조항을 두었다. 즉 官用 재산을 침해한 자들이 자신의 즉위일인 延祐 7년(1320) 3월 11일 이전에 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이미 마쳤으면, 관에 몰수해야 하는 노비와 재산은 가치를 환산하여 징수하고, 조사하여 가산이 이보다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나머지 액수는 모두 면제해 주었다. (《元典章》〈新集 國典 詔令〉[至治改元詔] 諸人侵欺盜用失陷短少減駁合追係官錢糧, 如在延祐 七年三月十一日詔書已前, 已有追理文案者, 先將奴婢財產盡數准折入官, 不敷之數, 體覆明白, 並從釋免.) 이 조서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이와 같은 면제 조항이 泰定

(5) 기타

이 밖에도 《至正條格》에는 관리들의 각종 부정에 대한 다수의 처벌 규정이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한 규정으로 염장의 관리들이 가지는 금전의 채권에 대해 이자를 정한 것이 있다. 至正 2년(1342)에는 각 염장관, 攢典⁹⁹⁾ 등이 금전채권을 놓을 때는 2달마다 이자는 3分이며 기간이 비록 많이 지나더라도 1本1利(10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이자를 너무 많이 취하고 문서 계약을 교묘하게 해서 본전을 허위로 더함이 있으면 枉法으로 논했다. 이때 남은 이자는 주인에게 주었고 본전과 이자는 관에 몰수하였는데, 工本을 빼돌리고 금전을 억지로 요구한 것에 근거하여 枉法으로 贓을 계산하여 논죄하는데, 장을 추징하여 주인에게 주며, 그리하여 범인에게서 中統鈔¹⁰⁰⁾ 25냥을 징수하여 고발한 이에게 상으로 준다.¹⁰¹⁾ 이러한 1본1리의 원칙은 이미 中統 2년(1261)에 등장하며 《元典章》에서는 〈戶部 卷13 錢債 私債〉 항목에 수록해 놓았다.¹⁰²⁾

3) 포상 규정

(1) 생산 감독

運司官은 소금 생산량을 감독하는데 만약 정해진 생산 액수보다 증가함이 있으면 그 증가분에 따라 품계를 올릴 수 있었다. 즉 원액을 10分으로 해서

2년 전에 있었을 것이다.

99) 攢典: 찬전은 창고 등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이전을 말한다. 《史學指南》〈卷1 吏員〉攢典: 會計數目之吏也. 漢曰倉庫吏, 金·宋曰攢典.

100) 中統鈔: 中統寶鈔라고도 하며 元의 世祖가 紙幣專用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至元寶鈔와 함께 印造, 유통시킨 지폐로서 그 액면가치가 10文으로부터 2貫文에 이르는 9종이 있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중통보초’ 항목 참조)

101)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⑨ 各場官、典人等出放錢債, 每兩月例參分, 年月雖多, 不過壹本壹利. 若有多餘取息, 巧立文契, 虛答本錢, 以枉法論. 餘利給主. 本息沒官外, 據扣除工本, 勒索分例者, 以枉法計贓論罪, 追贓給主, 仍於犯人名下, 徵中統鈔貳拾伍兩, 付告人充賞.

102) 《元典章》〈戶部 卷13 錢債 私債〉 [錢債止還一本一利] 若管民官委係為民戶欠少債負, 照依已降聖旨並行倚聞之數, 已後別行定奪, 仰債主並不得取豪. 外據民間私借錢債, 驗元借底契, 止還一本一利. 其間雖有續倒文契, 當官毀抹, 並不准使. 若先有已還數日, 前後通間照算, 止還一本一利.

증가함이 1분에 이르면 관원의 성적 평가에서 ‘우수’로 정탈하고, 2분이면 1 資歷¹⁰³⁾을 감하고, 3분이면 1等を 올리며, 4분 이상이면 2等を 올렸다. 반대로 감소함이 1분에 이르면 1資를 더하고, 2분이면 1等を 내리고, 3분 이상이면 2等を 내리며, 모두 追陪하여¹⁰⁴⁾ 단죄하였다.¹⁰⁵⁾

그리고 運司에서 관사를 지키는 運官·首領官은 판매한 소금 포대의 계산을 총괄하여 행하는데, 전매 수익금이 관에 이르는 것과 소금 포대가 염장을 나가는 것을 증험하여야 판매금을 수납하도록 허용하였다. 10분을 비율로 하여 판매를 증가시킴이 1분에 이르면 상을 주고, 2분 이상이면 더욱 올려서 임용하고, 3분이면 1資를 감하고, 4분 이상이면 1等を 올린다. 반대로 감소함이 1분에 이르면 1資를 더하고, 2분 이상이면 1等を 내리고, 3분이면 2等を 내리며, 배상하여 단죄하도록 하였다. 또 소금을 구울 때에는 運官 등의 관원이 법을 세워 감시하고 징수·감독하여 증가함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구운 소금의 양이 감소하였다면 위의 예에 견주어 동일하게 黜降시키고 단죄하였다.¹⁰⁶⁾

소금의 생산과 전매 수익의 납부를 독려하는 관원이 각 염장에 가서 조사할 때, 증가분과 감소분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제외하고 10분을 비율로 하여 증가함이 1분에 이르면 ‘우수’로 정탈하고, 2분 이상이면 1자를 감하고, 3분이면 1등을 올리고, 4분 이상이면 2등을 올려 주었다. 감소함이 1분이면 1자를 더하고, 2분이면 1등을 내리고, 3분 이상이면 2등을 내리며, 또한 追陪하

103) 資歷: 관원이 승진하기 위한 근무 연한을 이른다. 관원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 없이 임기를 채우면 승진시키는 제도를 循資法 또는 循資格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唐나라 開元 18년(730)에 裴光庭이 吏部尚書가 되면서 시행한 ‘循資格’에서 유래한다.

104) ‘追陪’라는 개념의 정확한 뜻은 불분명하지만 《元典章》 내의 다른 문장에서 錢物과 함께 사용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듯하다. 일단은 추정해서 배상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105)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7 [增虧鹽課陞降] 各處運司官親臨場分煎辦鹽課, 以元額十分爲率, 增及一分, 從優定奪, 貳分減一資歷, 參分陞一等, 四分之上陞貳等。虧及一分添一資, 貳分降一等, 參分之上降貳等, 皆須追陪斷罪。

106)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7 [增虧鹽課陞降] 運司、守司, 運官、首領官, 總行措辦發賣鹽袋, 驗課鈔到官、鹽袋出場, 方許結課。以拾分爲率, 增賣及一分者給賞, 貳分之上優加陞用, 參分減一資, 肆分之上陞一等。虧及一分添一資, 貳分之上降一等, 參分者降貳等, 釐勒陪償斷罪。煎鹽其間, 立法關防恢辦, 務要有增。若有虧煎, 比例一體黜降斷罪。

여 단죄하였다.¹⁰⁷⁾

河東과 陝西는 소금의 생산 방식 및 생산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의 다른 지역과 달리 運司에서 鹽引을 판매하고 전매 수익금의 납입과 소금 포대의 검사 등 업무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소금 전매 수익금¹⁰⁸⁾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있으면 위의 예에 견주어 동일하게 올리고 내리며 追陪하여 단죄하였다.¹⁰⁹⁾

(2) 사염 검거

기본적으로 私鹽犯을 붙잡아 처리하면 관리에게 그 성과에 따라서 포상을 주어 그 감독 업무를 장려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넓은 중국 대륙에서는 소금의 생산량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소금의 물량이 풍부한 兩淮와 兩浙 등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사염과 犯界鹽貨를 붙잡은 양이 500리 이상이면 官 1등을 올려 주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금의 생산량이 적었던 大都 주변 지역에서는 200리 이상이면 1등을 올려 주었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인수인계 사항을 적어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 서류인 解由에 기록하여 승진 평가에 참고하였다.¹¹⁰⁾

군관인 만호·천호·백호가 사염을 붙잡으면 포상하는 규정은 至正 2년(1342)에 나타난다. 직접 요충지에서 순찰하는 백호가 사염이 3번 발생함을 잡거나, 소금의 순시를 맡은 천호가(사염이) 5번 이상 발생함을 잡거나, 만

107)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7 [增虧鹽課陞降] 分催煎辦官驗各場分, 除增虧相補, 以拾分爲率, 增及一分從優定奪, 貳分之上減一資, 參分陞一等, 四分之上陞貳等。虧一分添一資, 貳分降一等, 參分之上降貳等, 亦行追陪斷罪。

108) 《至正條格》에서는 ‘鹽數’로 되어 있어 소금 생산량인 듯하지만, 《元典章》〈新集 吏部 官制〉[鹽場官陞等]에는 ‘鹽課’로 되어 있어 염인을 판매하여 얻은 전매 수익금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내용에서 運司官의 경우 전매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의거하여 ‘鹽課’로 읽고 번역하였다.

109)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7 [增虧鹽課陞降] 河東、陝西運司, 發賣鹽引, 驗課鈔到官、鹽袋出場, 以十分爲率, 若有增虧鹽數(課), 比例一體陞降(賞), 追陪斷罪。

110)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5 [私鹽罪賞] ⑥ 南北事體不同。軍民官若能奉公, 於參年之內, 捉獲私鹽并犯界鹽貨, 兩淮、兩浙等處伍伯引之上, 腹裏貳伯引之上, 陞官壹等。不及分數者, 任滿具獲到起數, 於解由內開寫, 量加陞擢。

호가 10번 발생함을 잡으면 각각 散官¹¹¹⁾ 1등을 올려 주었다.¹¹²⁾

그리고 직접 체포를 담당하는 자들은 업무상 체포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었지만, 비리를 방지하고 체포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포상을 하였다. 私鹽을 붙잡으면 일반인이 받는 포상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다.¹¹³⁾ 따라서 범인에게서 몰수한 재산의 4분의 1을 지급하였고, 범인의 재산이 없으면 포획한 사염의 중량에 따라 1리마다 中統鈔 25貫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염을 사용해서 생선을 절이면 사염과 같이 과죄하였는데, 체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잡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서 절반을 줄이고 급부하였다.¹¹⁴⁾

大都 지역의 경비를 총괄하던 龍鎮衛의 군관과 각지의 험요지 및 항구 등을 지키는 군관·군인은 私鹽과 犯界鹽貨를 검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소금의 양이 100斤 이상부터 1引(=400斤)까지 이르면 鈔 100貫을 상으로 주고, 1引 이상이면 매 리마다 中統鈔 50貫을 더하여 주었다. 이 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범인들로부터 균등하게 징수하여 지급하고, 범인의 가산이 지급해야 할 상급에 미치지 못하면 관에서 대신 지급하였다. 그리고 3년 안에 사염과 범계염화를 잡아서 포획한 소금의 양이 2백 인 이상이면 1官을 올려 주었다.¹¹⁵⁾

111) 散官: 品階만 있고 實職은 없는 벼슬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맡은 관직은 그대로이지만 품계만 올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112)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6 [私鹽罪賞] ④ 今後親臨把隘巡禁百戶, 捉獲私鹽參起, 所委巡鹽千戶伍起之上, 萬戶至拾起, 各陞散官壹等。

113)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5 [私鹽罪賞] ⑦ 其告首親獲之人, 於犯人沒官家產內, 壹半充賞。若犯人貧窮無產可籍, 雖有不酬其功者, 每私鹽壹引, 官給中統鈔伍拾貫, 應捕人減半。

114) 《至正條格》〈斷例 廢庫〉 § 392 [捉獲醃魚給賞] 河南犯人王伴哥, 捕到鮮魚, 博換私鹽, 節次醃魚參拾貳秤, 在船貨賣。弓手吳孫勝等捉獲, 既同私鹽科罪, 擬合依例給賞。弓手吳孫勝, 即係應捕之人, 減半給付。

115) 《至正條格》〈斷例 廢庫〉 § 365 [私鹽罪賞] ⑨ 龍鎮衛官并本管守把隘口軍官、軍人, 捉獲私鹽、犯界鹽貨。伯斤之上至壹引, 賞鈔壹伯貫, 壹引之上者, 每引添中統鈔伍拾貫, 並於犯人名下均徵。犯人家產不及, 官爲代支。參年之內, 獲及貳伯引者, 加壹官。

3. 생산자 대상 조항

1) 소금 생산과 私鹽

소금을 생산하는 竈戶와 工丁人 등이 사사로이 소금을 팔면 私鹽의 예에 의거해 과단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이웃이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경우 일반 사염죄의 이웃이 장60으로 처벌받는 것에 등급을 더해 장70으로 처벌하였다.¹¹⁶⁾ 조호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염과 연루될 가능성이 많았다. 따라서 조호 서로 간에 감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 사염범의 이웃이 고발하지 않은 때보다 1등을 가중하여 처벌한 것이다.

각 염장에는 正鹽이라고 하여 일정한 소금 생산량이 할당되었다. 이를 초과하여 구워 낸 餘鹽이라도 사사로이 팔게 되면 私鹽法으로 처벌하였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범인에게서 中統鈔 2定을 추징해서 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竈戶가 고용한 滷丁(노정)이¹¹⁷⁾ 사용하는 뿔감과 양식은 보름마다 수에 따라 지급하고 원조하였다. 만약 여기에 꺾액이 있게 되면 5일 이하는 태17에, 10일은 태27에, 보름이면 태37에 처하였다. 만약 소금 굽는 것을 태만하게 하여 그만두면 그 많고 적음을 증험해서 동일하게 처벌하였다.¹¹⁸⁾

창고·團을 수파하는 군인이나 백성·竈戶가 소금 창고 바깥에서 소금 포대를 포장하면서 땅에 소금을 떨어뜨리거나, 조호가 소금을 메고 운송·납부

116)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⑥ 竈戶、工丁人等私賣鹽者，依私鹽例科斷。兩鄰知而不首者，加等杖柒拾。

117) 조호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하여 계급이 나뉘어 있었다. 부유한 조호는 다른 鹽戶 를 고용하기도 하였다.(陈高华, 「元代盐政及其社会影响」, 『陈高华文集』(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5), 一. (四)盐戶内部的阶级关系 참조.)

118) 《至正條格》〈斷例 廩庫〉 § 366 [私鹽罪賞] ③ 各場但有煎出餘鹽，官爲作數，依例給付工本，不得私下盜賣。違者，以私鹽法科斷，仍聽諸人陳告，於犯人名下追中統鈔貳定充賞。其竈戶所雇插和滷丁合用柴糧，上下半月依數支付援濟。但有空闕，伍日以下，笞決壹拾柒，拾日貳拾柒，半月參拾柒。若有怠慢虧煎，驗其多寡，一體坐罪。; 이 조문의 문장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한 점이 있다. 즉 滷丁에게 뿔감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주체를 관리로 보느냐 아니면 조호로 보느냐에 따라 물자를 급부하지 않는 날수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정을 고용할 정도의 조호라면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며, 생산 업무에 추가되는 인력의 양식까지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조호를 주체로 보았다.

하는데 키 안에서 소금을 새게 하여 끌어 모아서 싸고 집에 가져가 식용하면 태17에 처하였다. 야외에 배를 대어 주인 없는 사염을 주웠는데 즉시 고발하지 않고 스스로 식용하는 사람은 태37에 처하였다.¹¹⁹⁾

2) 소금 대용품

元나라 후기에 경제 체제가 흔들리면서 소금의 가치가 등귀하고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자, 소금을 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강구되었다. 至元 8년(1271)에는 鹹土(감토, 소금기가 있는 흙)을 흠치고 여기에서 흙을 제거하여 소금을 얻으려는 자가 있었다. 刑部에서는 감토에서 흙을 제거해서 식용하며, 黃穗草¹²⁰⁾를 캐서 재로 만들고 간수를 걸러 소금을 만들면 장80으로 처벌하였던 金나라의 舊例를¹²¹⁾ 검토하여 이들을 사염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중서성에서는 이 의견에 따라 이들을 결태37로 처벌하도록 결정하였다.¹²²⁾

또 조호가 있는 곳에서 간수를 사고 소금을 구우려고 하다가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범죄는 결국 소금을 만들지 못한 것이므로 사염죄와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간수를 사고 판 사람은 각각 장60에 처하고, 이것을 도운 짐꾼·마소몰이꾼·위탁업자와 중개 행위를 한 引領은 1등을 감경하여 태50에 처하였다. 간수가 흠친 것이면 간수를 흠친 사람만 처벌하고, 사적으로 만든 간수를 사서 먹으면 각각 태47에 처하였다. 그리고 앞서

119) 《至正條格》〈斷例 廢庫〉 § 381 [食用無主鹽] 守把倉團軍人或百姓、竈戶於鹽倉放外裝袋，因而撒鹽在地，及竈戶挑鹽送納，籬內漏下鹽貨，掃聚取撮，包裹歸家食用者，笞壹拾柒下。野泊拾取無主私鹽，不即首告，自行食用之人，笞參拾柒下。

120) 黃穗草: 염부자(또는 오배자, 불나무)라는 식물은 열매에 소금기가 있다. 작은 가지에는 노란빛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꽃은 노란빛을 띤 흰색인데, 열매는 노란색을 띤 붉은색이라고 한다. 이 열매로 소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한 황수초는 노란 꽃과 열매를 지닌 염부자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다.《通志》〈卷76〉鹽麩子曰‘叛奴鹽’，蜀人曰‘酸桶’，吳人曰‘烏鹽’。其實秋熟為穗，著粒如小豆，其上有鹽如雪，可以調羹。戎人亦用此，謂之‘木鹽’，故有叛奴鹽之名。

121) 《金史》〈卷49 食貨志4〉尚書省以盧附翼所言，遂定制灶戶盜賣課鹽法，若應納鹽課外有餘，則盡以申官，若留者減盜一等。若刮鹹土煎食之，采黃穗草燒灰淋鹵，及以醇粥為酒者，杖八十。

122) 《至正條格》〈斷例 廢庫〉 § 384 [掃刮鹹土] 至元八年，刑部呈：“益都路日照縣馬青等，偷掃鹹土。照得舊例，刮掃鹹土食用，與採黃蕙草、燒灰、淋鹵者同。馬青所犯，難同私鹽。”都省擬：“將各人斷決參拾柒下。”

의 사례에서 나왔던 감토에서 흙을 제거해서 식용하는 것과 황수초를 캐서 재로 만들고 간수를 걸러 소금을 만드는 것은 태37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¹²³⁾

3) 부산물 제조자

醬을 짜는 집에서 만약 관염을 샀다는 증빙이 없이 그냥 사염의 간수를 써서醬을 만들고 판매했는데 사건이 관에 발견되었으면, 사염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염법으로 처벌하였다. 간수를 써서 장을 만든 것이 500斤 이상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사염법으로 처벌하였고, 근의 무게가 500근이 되지 않으면 운사가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석방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도 일반 사염범과 마찬가지로 발견된 집만 처리하고 남은 무고하면 안 되며,醬은 관에 몰수하였다.¹²⁴⁾

각종 생선 등 어물과 죽순을 절이는 데에도 많은 소금이 쓰였기 때문에 《至正條格》醃滷魚鰕조에는 이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兩浙 運司에서는 매년 규정해서 거두는 소금에서 7~8천 리를 떼어서 양절에 나누어 주는데, 바닷가의 어호를 불러서 이들이 구매하기를 청하면 소금을 지급하였다. 생선·새우·건어·대합·죽순을 절이면 관에서 검사하여 程을 지급하고 판매하도록 한다. 만약 절인 생선·건어 등을 붙잡았는데 절임류 제조 引目이 없으면 정범은 사염법과 같이 처벌하였다. 짐꾼·위탁업자와 상품 거래를 중개한 引頷은 1등을 감경하고, 사정을 알면서 식용하면 또 1등을 감경하며, 사정을 알지 못하면 私鹽罪賞조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사염을 사 먹은 예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았다.¹²⁵⁾ 《元典章》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至

123) 《至正條格》〈斷例 廩庫〉 § 387 [買食滷水鹹土] 諸人於窰戶處，買到滷水，欲行煎鹽，被獲到官。若同私鹽科斷，終未成鹽，量擬買賣之人各杖陸拾，挑擔、撐載、受寄，爲牙引頷之人，減等笞伍拾。偷取滷水者，止坐偷滷之人。買食私滷者，各笞肆拾柒下。其掃刮鹹土食用，與採黃蕪草、燒灰、淋滷，笞參拾柒下。

124) 《至正條格》〈斷例 廩庫〉 § 386 [滷水合醬] 今後各處賣醬之家，如無買到官鹽引目由帖，輒用私鹽滷水，合醬貨賣，事發到官，其有私鹽顯跡者，以私鹽法科斷。若用滷水合醬至伍伯斤之上，亦同私鹽法。斤重不及者，從運司斟酌多寡決放。止理見發之家，毋得輒轉指攀，醬貨沒官。

125) 《至正條格》〈斷例 廩庫〉 § 388 [醃滷魚鰕] 江浙省咨：“兩浙運司申：‘每年於額辦鹽內，提豁柒捌千引，分俵兩浙，召募瀕海漁戶，請買支鹽，醃滷魚鰕、鯊鮓、竹筍，檢校給程發賣，若有捉獲所

正條格》에서 처벌 규정은 사염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감경 정도를 표현한 것에 비해, 《元典章》은 정범은 장70에 처하고 재산의 절반을 관에 몰수하고 족쇄를 차고 2년 동안 복역시키며, 짐꾼·위탁업자와 중개한引領은 장60에, 사 먹은 사람은 태57에 처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처벌은 兩浙 運司에서 임의로 시행하던 내규인데, 이것을 戶部와 刑部에서 의논하면서 사정을 알고 사 먹은 자와 알지 못하고 사 먹은 자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의견을 추가하였고, 다시 中書省에서 승인하면서 斷例로 만들어진 규정이다.¹²⁶⁾

食鹽 지역에서 매실을 절이는 집은 사용하는 소금의 수량을 헤아려 30근 이상부터 100근까지는 모두 문서로 구매할 것을 청해야 했고, 그렇게 하면 鹽司에서 증빙[公據]을 내주었다. 그 나머지 行鹽 지역에서는 매실을 절이기 위해 官鹽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담당 관리가 증빙을 지급하였다. 만약 사염을 사용해 절였다가 결국 증거 물자가 적발되면 사염과 같이 처벌하였고, 명백한 증거 물자가 없고 또 관사의 증빙도 없으면 사정의 경중을 상세히 참작하여 판결하였다.¹²⁷⁾ 이것은 생선이나 건어물을 절이는 데에도 적용되어, 사용할 소금의 무게를 문서로 써서 운사에 가서 구매를 청구하면, 염사에서 증빙을 주었고, 행염 지역에서는 관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담당 관리가 증빙을 주었다. 이와 같은데도 어물을 절일 때 사염을 쓰고 그 증거가 명백하면 사염법과 같이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간수로 생선·건어를 절인 것을 그대로 관에 고하여 바치고 증거로 삼아야 하였다. 만약 어

醃魚鯨等物，却無醃造引目，正犯人比同私鹽法科斷。挑擔、受寄，爲牙引領之人，減壹等，知情食用者，又減壹等，不知情者，准例革撥。”戶部與刑部議得：“合依運司所擬。”都省准呈。

126) 《元典章》〈戶部 卷8 鹽課〉[鹽法通例] “諸犯私鹽淹滷魚鯨鯨鮓·竹筍貨賣，或自家食用，及博易諸物者。前件，照得每年本(同)[司]於額辦鹽內提豁七八千引，分婁兩晰，召募瀕海漁戶人家請質，給引支查，淹滷海鮮魚鯨鯨鮓·竹筍，檢據給程發賣。若有私鹽淹滷者捉獲，本司比同私鹽法科斷。正犯人杖七十，財產一半沒官，鑛役二年。挑擔受寄爲牙引領之人，杖六十。食用者，當五十七下。終非都省走到通例，今故未審若何。乞照詳。”刑部一同議得：私鹽淹過魚鯨者，合依運司所擬，比同私鹽法科斷藉配。所據挑擔受寄爲牙引領并食用之人，知情者依上科斷，不知情者依例革撥。前件，議得：私鹽淹滷魚鯨鮓·竹筍貨賣，或自家食用，及博易諸物犯人罪名，合依運司元呈。餘准所擬。

127) 《至正條格》〈斷例 廢庫〉 § 389 [醃造鹽梅] 其醃梅之家合用鹽貨，量擬參拾斤以上至伯斤，並行入狀請買，鹽司出給公據，其餘行鹽地面，聽買有引官鹽，有司給憑。若用私鹽淹滷，果有見獲明白權貨，合同私鹽科斷。如無明白權貨，又無官司憑據者，臨時詳酌輕重治罪。

기면 사염의 예에 의거하여 견주되 1등을 감경하여 처벌하는데 도형에 배정 함은 면제해 주고 어물은 관에 몰수하였다.¹²⁸⁾

또한 행염 지역에서 官鹽 이외에 소금이 들어간 모든 부산물들의 거래를 막게 된다면 유통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소금으로 절인 생선 등의 상품은 민간의 편의에 따라 각처에서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사염 행위가 있게 되면 물론 사염법에 의거해 처벌하였다.¹²⁹⁾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통해 원대 염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의 복잡성이다. 《至正條格》에 수록된 염법은 《元典章》에 비하면 정비된 모습을 보여 준다. 문체상으로는 몽골어한역체 문장에서 보다 정서된 한문 형태로 변환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여러 중복된 규정들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私鹽法의 경우 처벌 규정이 개정되는 가운데 《至正條格》에는 至正 2년(1342)의 규정만 수록하였으며, 다른 처벌 규정들의 경우 ‘依私鹽例’나 ‘同私鹽法’ 등과 같이 준용 방식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존재한다. 형사적 규정만이 아닌 여러 행정 절차적 규정들이 함께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염법 조항의 후반부에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犯界鹽貨조나¹³⁰⁾ 無權貨不坐조¹³¹⁾ 같은 경우에는

128) 《至正條格》〈斷例 廩庫〉 § 391 [滷水醃魚] 諸人醃滷魚鯿, 依醃梅例, 合用鹽貨斤重, 赴運司入狀請買, 鹽司出給公據, 其餘行鹽地面, 聽買有引官鹽, 有司給據。如是私鹽醃滷, 權貨明白者, 同私鹽法外, 據滷水醃滷魚鯿, 仍須告給官由引據。如違, 比依私鹽例, 減等科斷, 與免徒配, 魚貨沒官。

129) 《至正條格》〈斷例 廩庫〉 § 390 [醃魚不禁轉販] 福、興、漳、泉四路, 買用官鹽, 醃滷魚蟹。若擬行鹽地面, 不許轉販, 豈惟遏絕商旅, 抑亦澀滯鹽法。擬合聽從民便, 許令諸處投稅貨賣。因而夾帶私鹽, 依例科斷。

조문의 제목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조문의 내용에 언급된 사례의 반대해석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유추해야 하는 경우 까지 있다.

둘째, 官吏 대상 규정의 다양성이다. 元代에는 소금 전매 수익이 국가 재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던 만큼 私鹽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관리들이 염법 조항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의 행위태양 및 근무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運司의 관원 및 여러 소금 생산과 관련되는 관원뿐만 아니라 路·府·州·縣의 관리 및 군관·군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모두 염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부차적 규정의 집적이다. 《至正條格》의 염법에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산물인 醬, 어물·죽순 등의 절임류에 대한 규정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사례 형태로 수록된 경우가 많다. 명칭 등의 고유 명사와 중량·금액 등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조문은 사례집으로서의 활용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범죄 상황을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는 기본 법전으로서의 성격은 다소 부족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至正條格》에 기록된 염법 조항만을 분석하여 얻어 낸 결과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나라의 염법 규정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또 전매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至正條格》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 元代 법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하겠다.

130) 본고 Ⅲ. 1. 2) 다) 犯界鹽貨 참조.

131) 본고 Ⅲ. 1. 1) 다) 증거 부족 참조.

■ 참고문헌

1. 사료

- 《至正條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영인본·교주본.
 《大元聖政國朝典章》, 陳高華 외 點校, 『元典章』, 北京: 中華書局, 2011, 전4책.
 《金史》《元史》, 北京: 中華書局.
 (元)徐元瑞, 《吏學指南》, 정광·정승혜·양오진 해제·정리, 태학사, 2002.

2. 단행본

- 李崇興·祖生利, 『《元典章·刑部》语法研究』, 开封: 河南大学出版社, 2010.
 佐伯富, 『中國鹽政史の研究』, 京都: 法律文化社, 1988.
 曾仰豐, 『中國鹽政史』,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7.

3. 논문

- 김문경, 「元刊本《至正條格》에 대한 기초적 고찰」,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김호동, 「《至正條格》의 편찬과 원말의 정치」,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박민수, 「蒙元 제국의 鹽引 운영: 至元~大德 연간 江南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집』 33,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2009.
 박영록, 「『高麗史』에 수록된 蒙元公文의 用語와 翻譯에 대한 검토」,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_____, 「元代 直譯體公文의 構造 및 常套語 一考」,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설배환, 「몽골제국에서 詔令의 對民 전달－粉壁과 口頭 사례 분석－」, 『古文書研究』 제43호, 한국고문서학회, 2013.
 안승준, 「《至正條格》의 소장 및 보존 경위에 대한 고찰」,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양오진, 「이문(吏文)과 『지정조격(至正條格)』의 언어」, 『중국언어연구』 27, 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이개석, 「《至正條格》의 편찬과 法制史上의 의의」,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정공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대학교 법학』 5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张国旺, 「论元代盐运司官吏的选任和管理」, 『中国史研究』 2008年 第3期, 首都师范大学历史学院, 2008.
 _____, 「元代统一局面下盐官制度的重构」, 『河北学刊』 2009, 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2009.
 _____, 「元代盐务政策演变略论——《元典章·课程》研究之一」, 『盐业史研究』 2014, 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2014.
 陈高华, 「元代盐政及其社会影响」, 『陈高华文集』, 上海辞书出版社, 2005.
 한상권, 「세종대 치도론(治盜論)과 『대명률』－절도삼범자(竊盜三犯者) 처벌을 둘러싼 논변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2007.
 한영근, 「원대 염전매제도의 성격에 관하여」, 『동의사학』 9·10, 동의대학교 사학회, 1996.
 _____, 「원대 염법의 성립과 운용에 관한 고찰」, 『부대사학』 23,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k

Kim, Jun Hyeon*

In China, the salt monopoly system had taken effect for long time. And Yuan dynasty mostly had depended on salt monopoly revenue.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Yuan dynasty had been concerned with administration of the salt monopoly system and violators of that system. So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which consists of administrative norms in relation to the monopoly of salt and the punishment for disobeying that norms, appeared and organized at that time.

There are few existing code of Yuan dynasty. In 2003, However, the remnants of Jijeongjogyek(至正條格) which is the last code of Yuan dynasty are discovered in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law of Yuan dynasty is possible now and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k.

The characteristic of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k is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with Wonjeon- jang(元典章) which is the code edited by a local government of Yuan dynasty, the law in Jijeongjogyek seems to be arranged but there is still a bit complexity. Second, there are many norms toward the government officials because it is necessary to use

* Ph.D Candidate i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various officials for working of the monopoly system. Third, in Jjeongjogyek there are norms associated with minor details like souse which is a by-product of salt.

[Key Words] Jjeongjogyek(至正條格), Yuan Dynasty, Salt Monopoly System, Wonjeonjang(元典章)